

민생물가 특별관리  
관계장관 TF  
(공개, ③번 안건)

# 주사기 · 주사침 및 요소수 · 요소 매점매석금지 고시 운영방안

2026. 7. 24.

재 정 경 제 부

# 1 주사기·주사침 매점매석금지 고시

◇ 수급상황이 개선되어 **보관량 기준을 완화**하고 **판매량 제한을 해제**

□ **(배경)** 중동전쟁 영향으로 나프타 등 원료 수급불안에 따라 의료용 주사기·주사침의 매점매석행위를 금지중\*(「물가안정법」 제7조)

\* 전년대비 ①150% 초과 보관, ②110% 초과 판매, ③동일구매처 100% 초과 판매 금지

○ 주사기 수급상황\*은 안정적이며 가수요 감소, 수입제품 대체\*\* 등 영향으로 6월말부터 제조업체 재고량 증가 및 생산량 감소

\* 병원 대상 재고조사 결과 중동전쟁 이전 수준 회복(전년대비 97% 수준, 6.16일)

\*\* 해외 제조업체는 판매량 등 제한을 받지 않아 대체 제품으로 활용

## < 주사기 제조업체 생산량·재고량 현황 >

(단위: 만개)

| 구 분    | 4월    |       | 5월    |       |       |       |       | 6월    |       |       |       | 7월    |       |       |
|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
|        | 3주    | 4주    | 1주    | 2주    | 3주    | 4주    | 5주    | 1주    | 2주    | 3주    | 4주    | 1주    | 2주    | 3주    |
| 일일 생산량 | 482   | 515   | 492   | 520   | 469   | 491   | 517   | 449   | 429   | 390   | 403   | 375   | 372   | 354   |
| 재고량    | 4,751 | 4,788 | 4,977 | 4,868 | 4,589 | 4,637 | 4,818 | 4,962 | 5,245 | 5,564 | 6,292 | 6,600 | 6,758 | 7,033 |

□ **(추진방향)** 보관량 기준 완화(150 → 200%) 및 판매량 제한 해제

○ (보관량 - 완화) 수급이 안정됨에 따라 제조·판매업체의 재고조절 및 영세업체의 분할구매 부담 등을 고려하여 보관량 기준 완화

○ (판매량 - 해제) 제조업체 재고량이 증가함에 따라 생산위축을 유발할 수 있어 원활한 유통을 위해 판매량 제한은 해제

| 현 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개 정 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· 전년도 월평균 판매량의 <b>150% 초과 보관</b> 금지             | · 전년도 월평균 판매량의 <b>200% 초과 보관</b> 금지 |
| · 전년도 월평균 판매량의 110% 초과 판매 금지                    | < 삭 제 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· 동일한 구매처에 '25.12~'26.2월<br>월평균 판매량을 초과하여 판매 금지 | < 삭 제 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○ (기간) 고시 개정 후 기존 고시 시행기간인 8.31일까지 적용

## 2 요소수·요소 매점매석금지 고시

◇ 중동전쟁 지속 등 대외 여건 불확실성 감안하여 1개월 연장

- (배경) 중동전쟁 영향으로 차량용 요소의 수급불안에 따라 차량용 요소수·요소의 매점매석행위를 금지중(「물가안정법」 제7조)

\* 경유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의 저감을 위하여 사용하는 촉매제

| 적용물품       | 시행기간                 | 적용대상                       | 매점매석행위 판단기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요소수,<br>요소 | '26.3.27.<br>~ 7.31. | 요소수 수입·제조·판매자<br>요소 수입·판매자 | · 전년도 월평균 판매량의 150%<br>초과하여 7일 이상 보관 금지 |

- (추진방향) 매점매석고시 시행 등으로 현재 수급은 안정세이나, 중동전쟁 불확실성을 감안하여 1개월 연장 추진

- (수급동향) 국내 요소 재고(공공비축+민간 합산)는 평시 수준 확보, 중국의 수출물량 배정(150만t, 5월말)으로 수입 여건 개선 전망
  - 다만, 중동전쟁 지속 등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을 감안하여 수급상황을 신중히 모니터링할 필요
- (기간) 8.31일까지 1개월 연장하고, 중동전쟁 상황, 요소수·요소의 수급상황을 보아가며 추가 연장여부 검토